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 안 설 명

(김명국 의원 대표발의)



고령군의회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김 명 국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역” 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김명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8. 27.

발 의 자 : 김명국 · 이철호 · 유희순

· 성원환 · 김기창 · 성낙철의원

1. 제정이유

-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와 제6조)

3. 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고령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